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
	배포일시	2016.05.09(월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 공공주택정책과	담당 자	• 과장 김철홍, 사무관 하재범, 주무관 김대영 • ☎ (044)201-4505, 4508	
보 도 일 시	2016년 5월 10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5. 10(화) 10:00 이후 보도 가능		

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 복합개발 시 용적률 완화

- 「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」 국무회의 의결(5.10) -

-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할 경우 해당 주차장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되어 용적률이 완화된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강호인)는, 「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 회의, '15.12.17」 후속조치로 추진한 「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」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(5.10)하였다고 밝혔다.
-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- 철도·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 시 해당 주차장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되어 용적률이 완화된다.
 - 현재도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 복합개발은 가능하지만, 주차장면적이 건축연면적에 포함되어 용적률이 산정됨에 따라 주택공급면적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.

-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차장면적을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하면 전체적인 건축가능면적이 증가하게 되어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가능해지고,
 - 도시계획시설로 확보된 공공주차장은 인근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밝혔다.
- 개정안은 2016년 5월 17일부터 시행되며,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(<http://www.law.go.kr>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하재범 사무관(☎ 044-201-450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